



2024.7.22.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03호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 지속가능투자 vs 그린워싱



김은아(혁신성장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7월 22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Contents

01	03	02	07	03	10
제품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명서, 환경인증		지속가능투자로 이어지는 환경인증		그린워싱으로 이어지는 환경인증	
04	12	05	16		
미래전망, 이머징 이슈		정책제언			



요약

전 세계는 신성장 동력으로써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산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기업은 '녹색' 또는 '지속가능성' 활동을 증명하는 ESG 인증 같은 환경인증이 기업의 **투자유치와 소비자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반대 급부로 **무분별한 환경인증이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인증제도 고도화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과거의 인증이 자발적이었다면 향후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의무화에 따른 환경인증은 과거와는 다른 무게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브리프는 이렇게 빠르게 확장·변화하는 환경인증의 미래에 대비도를 높이고자 ① 환경인증에 대한 개념 및 국내 이슈를 소개하고, ② 현행 환경인증 제도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투자자와 그린워싱과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③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머징 이슈를 제시하고, ④ 국내 기업이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할 환경인증 제도 및 그린워싱 방지에 필요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대하여 제언한다.

■ 제품과 기업의 지속가능 증명서, 환경인증

- 환경인증은 국가법령 및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부여, 라벨링으로 인증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줌
- 기업은 제품 경쟁력 및 시장 접근성 향상(+ 효과)와 함께 인증 발급 및 유지 비용(- 효과)을 고려하여 환경인증 전략 수립
- 환경인증 관련 국내이슈는 국내 정책 요소와 해외 규제 강화 여건에 따라 증가 추세이며, 순환경제 관련 내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지속가능투자 또는 그린워싱으로 이어지는 환경인증

- ESG 투자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환경인증 간의 연계성이 존재하며, 수출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해외 규제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환경인증 수요 증가
- 재생원료가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등 친환경제품이 대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품질인증 목적의 환경인증 필요
-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친환경제품 표시된 제품이 대체재 대비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엄격한 환경인증제는 그린워싱 방지 수단일 수도 있으나 제3자 검증이 부재하거나 느슨하게 운영되는 경우 그린워싱에 기여 가능

* 본 브리프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06호 「순환경제 글로벌 혁신전략: 표준화,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에서 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함



■ 미래전망, 이머징 이슈

- 2024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표준에 기반한 제3자 인증을 요구, 재무제표 공시와 통합되는 추세임
- 2024년말 최종안 발표가 예상되는 플라스틱협약 이행 수단은 객관적 평가에 기반한 환경인증 요소와 연결됨에 따라 관련 인증제도 준비 필요
- 생물다양성 보존 제도 강화 움직임과 관련, 기업의 생물다양성 손실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증가, ESG 공시기준에 생물다양성 항목이 포함될 예정으로 관련 대응 중요성 증가 전망

■ 정책제언

- 빠르게 확장 및 의무화 되는 환경인증 및 그린워싱에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분절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거버넌스 및 법제도 구축, 효율성 제고 필요
- 다양한 글로벌 공시 기준 및 신규정책 대응 환경정보공개 통합 지원 솔루션 제공 필요
- ESG 인증 및 환경성과 검증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국내 기업의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반면, 과열된 인증시장은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표준 및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 기준을 정립, 평가/검증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01

제품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명서, 환경인증

1. 환경부문 지속가능 증명서로서 환경인증

- 환경인증은 국가법령 및 국제표준에 근거한 검증 과정을 거쳐 부여
 - 인증기관 및 인증의 대상 등에 따라 구분(표 1 참조)
 - 환경인증은 환경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다수의 국제표준 및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부여
 - 인증 운영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정한 인증 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

표 1 환경인증의 종류

구분	인증명칭(예)	인증기준	인증 전담기관
ISO 인증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 국제표준(ISO 14001)	한국표준협회
ESG 인증*	사회적 책임 관리 시스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 26000)	한국경영인증원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 국제표준(ISO 14001)	한국표준협회
	에너지경영시스템	에너지경영 국제표준(ISO 50001)	
기타	대한민국로하스인증	「대한민국 LOHAS인증 운영요령」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한국산업기술진흥원
	GR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 ESG 인증은 ISO 인증과 민간인증 요소를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는 인증 패키지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기존 지속가능보고서 환경 부문 기준에 해당 해당하는 ISO 인증을 중심으로 정리함

- 환경인증과 유사한 성격으로 환경성과(온실가스배출량, 탄소발자국 등)와 지속가능보고서 결과를 '검증'을 받은 경우 'OOO인증'을 받았다고 표기하기도 하며, 회계법인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수행
 - (예시) GRI 검증: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외부검증을 권장, GRI 검증을 받은 리포트에 "GRI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함

■ 환경인증 여부 및 종류를 보여주는 환경 라벨링

- 환경인증 획득은 기사화되어 기업 홍보에 활용되며, 인증마크(라벨)를 제품에 표시하여 성과 활용

- 환경라벨링은 환경 성과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식별하게 하는 마크를 통해 정보제공
- o 환경라벨링은 ISO 14024¹⁾에 따라 Type I, II, III로 구분
 - 상기 환경인증의 대다수는 Type I 환경라벨링을 사용, 표시하는 내용에 따라 라벨 해석에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Type III 또한 사용 가능
 - Type II의 경우 인증마크로 오인하기 쉬우나 '인증' 절차에 대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은 자기주장에 근거한 마크임

표 2 환경라벨링 종류 및 특징

구분	특징	혜택(예시)	인증 조건
Type I	제3자 인증, 정부 규제와 연계	녹색조달/녹색매장 납품, 에코머니 적립 등	예) 환경표지: 동일 용도 타 제품 대비 환경성* 개선
Type II	제3자 검증 없는 자기 주장, 허위광고에 활용되기도	친환경 이미지 제고	제조사 자체 기준으로 선언(예: 다양한 디자인의 eco 라벨, 무형광 등)
Type III	환경성 정보공개, 비전문가의 가독성 낮음	전문화된 기관 구매자 대상 환경적 적합성 홍보 등	예) 환경성적표지: 7대 환경영향 범주**에 대한 전과정평가결과 표시

* 환경성: 제품 제조,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 소비, 저소음, 인체 유해물질 노출

** 환경영향 범주: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자원발자국

출처: 김은아 외(2023) pp. 28-30의 내용을 구조화함

2. 환경인증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²⁾

■ 긍정적 효과

- o **제품 품질과 경쟁력 향상:** 기업은 표준에 기반한 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의 환경적 품질 및 성능을 개선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고취
- o **시장 접근성과 국제적 우위:** '인증'은 해외 시장에서 수출 및 진출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국제 시장에서 통상거래의 요건으로 작용 가능
 -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넓은 접근성을 갖게 될 수 있음
- o **인증산업의 성장:** 인증제도의 확대와 그에 따른 기업 및 제품의 인증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증기관과 검증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업무량과 수익의 증가로 이어짐

■ 부정적 효과

- o **생산 비용 증가:** 인증을 위한 비용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증제도의 확대 및 법적 강제력 강화는 단기적으로 비용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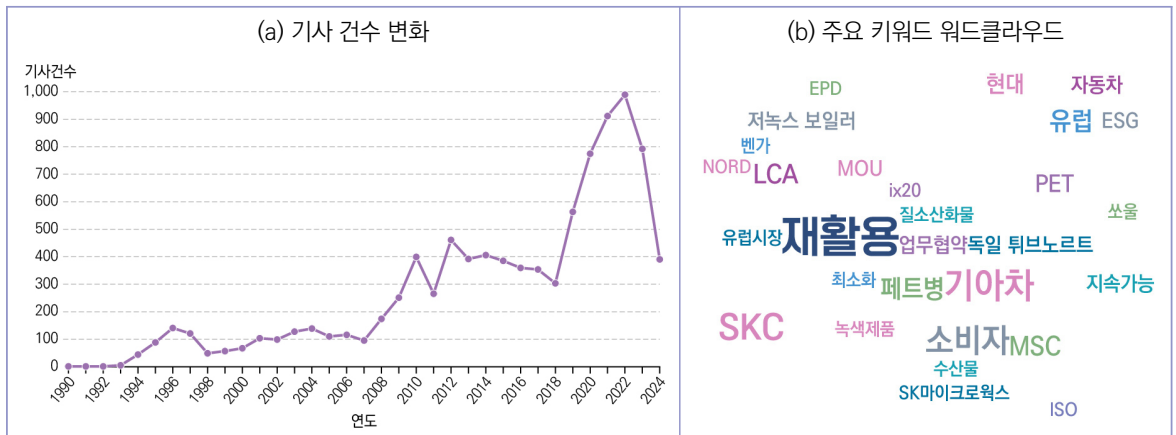
1)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14024는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에 대한 내용임

2) 아래 내용은 김은아 외(2023) 보고서 pp. 34-36 내용을 편집하여 작성함

- 그린워싱(Green Washing)³⁾: 제품 또는 생산과정의 일부에 국한한 평가결과에 기반한 인증의 경우 실제 제품 생산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에 비교우위가 없음에도 과거대비 개선여부에 근거하거나 일부 공정에서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 존재

3. 환경인증 관련 국내 이슈

그림 1 1990년~현재 환경인증 관련 기사 분석 결과



데이터 출처: 빅카인즈(검색일: 2024.06.21.)

- 환경인증 관련 국내이슈는 국내 정책 요소와 해외 규제 강화 여건에 따라 증가 추세
 - 전반적으로 환경인증 관련 기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19년~2022년에 급격히 관심도 상승, 최근 1~2년 사이 관심도 소폭 하락
 - 빅카인즈 검색포털⁴⁾에서 전체 기간(1990.1.1.~2024.06.21.) 키워드 (환경인증 or 환경라벨 or 에코라벨 or 환경표지 or 환경성적)가 제목 또는 본문에 포함된 기사 9,955건을 대상으로 함
 - 관심이 전무한 기간을 지나 1992년부터 환경표지 제도 시작과 함께 기사에 출현
 - 2012년까지 간헐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시기에는 주로 저탄소인증, 유해물질 노출저감, 자동차 친환경 유럽 인증 등 국내 녹색성장 정책 및 유럽발 규제강화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로, 지속도가 낮음
 - 2020년~2021년 1월까지 미세먼지 이슈와 연계된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관련 이슈가 가장 주목을 받음

3) 실제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개선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에도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을 통하여 친환경 이미지로 포장하는 행위로, 세부 내용은 본 브리프 3장 참조

4)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기사검색 포털사이트(<https://www.bigkinds.or.kr/>)

- 2021년 10월~2022년 1월 가장 오랜 기간 높은 관심도 유지: ESG, 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보일러, 기업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획득, 중소기업 인증 부담, 환경투자, 일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제외 등 순환경제 부문 이슈가 연계되어 주목을 받음
 - 순환경제 정책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 등의 인접 정책영역 이슈와 함께 환경인증 관련 정책 발표가 집중되었던 2021~22년에 비해 2023년부터 관련 정책 및 이슈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보도됨
- 전체 기사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순환경제 관련 환경인증 이슈
- 분석 대상 기사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그림 1-(b)) '재활용' 및 'ESG' 정책영역과 '플라스틱,' '자동차,' '보일러' 제품군과 '유럽' 시장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짐

02

지속가능투자로 이어지는 환경인증

1. 환경부문

지속가능투자 평가 기준 vs. 환경인증

- ESG⁵⁾ 투자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환경인증 간의 연계성 존재
 - ESG 평가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표준이 존재하며, 평가기관에 따라 상이한 방법을 사용 중
 - 평가기관마다 상이한 평가 방식을 사용함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환경인증 내용 존재(김은아, 2023)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 획득 ⇒ ESG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
 - 환경인증 결과가 투자 심사 과정에서 환경성과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 가능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에서 환경적 혜택 검증 요구 ⇒ 환경인증을 받음으로서 이러한 검증 요구 충족 가능(ICMA, 202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ESG 컨설팅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재활용 제품(GR) 인증 취득을 통한 친환경 마케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장기복, 2023)

2. 대체제로의 진입 및 규제 대응에 필요한 환경인증

- 재생원료가 기존의 원료를 대체하는 등 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제가 필수적임
 -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제품 성능 및 품질과 직결되므로 재생원료 품질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해당 분야 시장이 열릴 수 있음
 - 특히 규제가 강화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와 경제성이 기대되는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부문에 대한 수요가 존재
 - 산업통상자원부(2023)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제품, 플라스틱 열분해 및 해중합 결과물과 같은 고품질 재활용품을 신규 수요로 인식
 - 2023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및 용기를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관련 환경인증: 2024년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 및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가능⁶⁾

5) ESG(환경·사회·지배구조)

6) 2023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내용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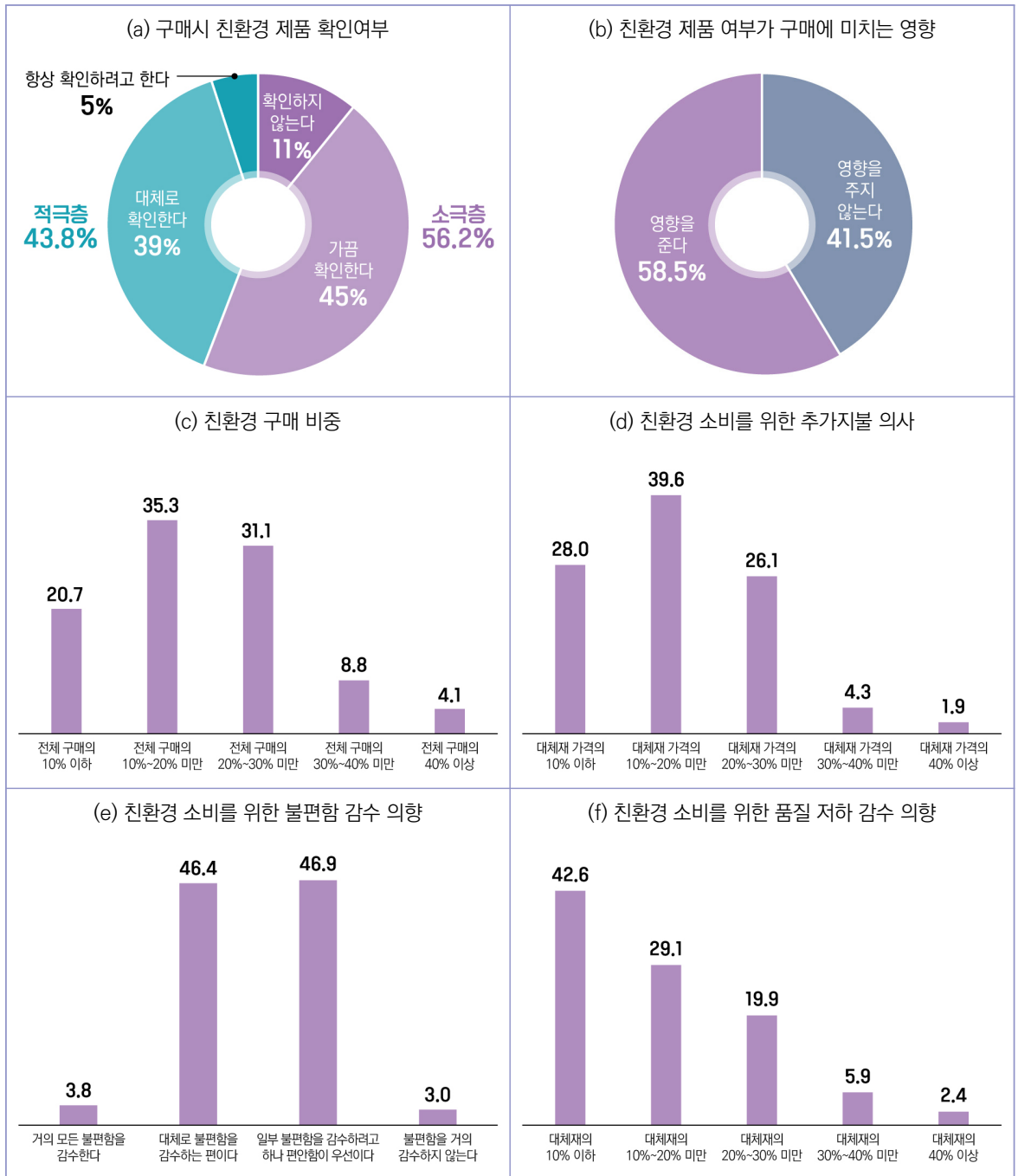
- 수출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해외 규제 변화에 따라 환경인증 수요 증가
 - 재생원료 함유 의무 및 함유량 기준 강화 추세 ⇒ 재생원료함유량 인증 필요
 - EU 배터리지침: 배터리 생산시 코발트, 납, 리튬, 니켈 재생원료 사용 의무(2031년, 2036년) 기준 제시(김은아, 2023)
 -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저지, 오레곤주는 플라스틱 포장재 대상 재생원료 사용 의무에 관한 규정 존재
 - 재생원료함유량 등의 환경인증 기준은 글로벌표준(ISO)에 근거하여 정립

3. 경쟁업체 대비 비교우위 선점을 위한 목적

-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⁷⁾ 환경인증을 통해 친환경제품 표시가 된 제품이 대체재 대비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 구매시 친환경 인증마크 정보(친환경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43.8%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며,
 - 친환경제품 여부가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경우(58.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41.5%)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전체 소비 중 친환경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구매의 10%~30%인 소비자가 대다수(66.4%)로, 전체 구매의 10% 미만인 소비자 비중인 20.7%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임
 - 더 나아가, 친환경 소비를 위하여 대체재 대비 가격, 불편함, 품질을 일정 비율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다수를 차지
 - 가격의 10% 이상의 가격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로 10%미만의 추가비용만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중(2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 편안함이 우선이거나 불편함을 거의 감수하지 않으려는 비중과 유사한 수준임
 - 대체재의 10% 이상의 품질 저하를 감수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 57.4%로 조사됨

7) 국내 18세 이상 남녀 634명 대상 2024.05.14.~5.26. 중 리서치앤리서치 패널조사 결과(95% 신뢰수준 ±3.89%)

그림 2 친환경 소비 인식조사 결과



03

그린워싱으로 이어지는 환경인증

1.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 그린워싱은 실제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개선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을 통하여 친환경 이미지로 포장하는 행위⁸⁾를 의미함
 -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와 같은 포괄적인 이미지 및 표현을 통하여 구현
 - 예시: X사는 2050년 넷제로 목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광고하였으나 2022년 호주는 X사가 탄소중립 목적의 실질적 실행 계획이 기업 비즈니스 계획에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 Australian Consumer Law와 Ad Standards' Environmental Claims Code를 위반하였다고 고발
- 환경인증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으나 그린워싱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
 - 국내 친환경 마케팅 제품 중 친환경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이 전체의 81.5%, 여기서 다른 인증마크 없이 문구만 존재하는 경우 35.6%(데이터트러스트, 2023)
 - 친환경 인증마크가 존재하더라도 Type II 라벨처럼 자의적 선언 성격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인증마크 없이 친환경성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인증 결과 또는 환경 목표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 그린워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는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인증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그린워싱 방지제도에 반영
 - 올해 유럽의회를 통과한 EU의 Green Claim Directive에 따르면 친환경성 주장은 제3자 검증에 기반한 환경성과 인증 필요(화우, 2024)
 - 2023년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포괄적인 심사 기준으로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구체적 계획 또는 구체적인 환경성과를 명시해야 함(지평, 2023)

8) 법무법인 세종(접속일: 2024.6.25.) 그린워싱 규제

2. 환경인증이 개입된 그린워싱 국내외 사례

- 사례1: A사 디젤 차량이 유럽 환경기준⁹⁾을 통과하였다고 홍보, 2015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해당 제품 배출가스(질소산화물) 검사시에만 배출제어기능이 정상 가동하도록하여 일상 주행시 배출기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벌금 부과 & 리콜 조치
- 사례2: B사 용기 제조에 “100% 해양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홍보에 사용, 2022년 호주 당국은 실제로 C사가 사용한 플라스틱은 해양이 아닌 해안가 지역에서 유래했으므로 그린워싱에 해당하며, 100% 해양 플라스틱 홍보를 금지함
- 사례3: C사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 ESG 채권을 발행,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하여 환경성을 평가하는 경우 환경성과 개선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9) 유로 5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기준)

04

미래전망, 이머징 이슈

1. ESG 공시, 기후공시 관련 이슈

- 2023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의무 범위 및 대상 점차 확대 추세
 -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공시하였으나 점차 **재무제표 공시와 연계한 의무** 공시 제도로 전환
 - **글로벌 표준에 기반한 제3자 인증 의무**
 -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2023년 지속가능보고 인증기준인 ISSA 5000 초안 발표
 - ※ 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 Board, ISSA: 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 공시 초기 **‘제한적 인증’** 의무로 시작, 이후 **‘합리적 인증’**으로 확대 전환 검토 중: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
 - 공시기준별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은 기업규모, 상장여부, 기업 소재지 등에 따라 상이함
 - 국내외 소재 대기업의 경우 빠르게는 회계연도 2025년에 대한 보고 시작
 - 기후관련 공시 내용에서 Scope 3 배출량 포함, 공개 시작 시점 및 적용 기업 범위가 쟁점 사항
 - ISSB는 도입 첫째 Scope 3 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 발표, ESRS는 750인 이하 사업장 첫째 면제, 미국은 요구하지 않음(이웅희, 2024)
 - 그러나 온실가스배출(scope 3) 및 인권 등에 관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가치사슬 전체** 정보 요구하므로 중소기업 또한 대기업 공시 시점에 맞춰 준비 필요

표 3 주요국 ESG/기후 공시 제도 현황

지역 범위	공시기준	공시기준 제정기구	발효 시기 (개정된 기준)	주요 내용
전세계	IFRS* Sustainability Standards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4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요구사항(S1): 기업가치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방법, 지표 및 목표) • 기후관련 공시기준(S2): 홍수 등 물리적 위험, 규제 등 전환 위험, 기후 관련 기회 •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 동시 발표 요구
유럽연합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	2024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 1: 모든 산업군 적용) 기후변화, 오염, 물/해양자원, 생물다양성/생태계, 자원사용/순환경제, 자사/가치사슬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 비즈니스 활동 • (Set 2: 산업별/비EU기업/상장 중소기업 적용) 2026년 이후 공개예정 • 전자공시시스템*** 기반 디지털 태그를 포함하여 보고
미국	SEC Sustainability Standards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2024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개)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정보, 거버넌스, 위험 관리 프로세스, 기후관련 목표/목적 • (온실가스배출량) Scope 1 & 2 공개: 신성장기업 및 소규모 보고기업 예외 • (재무제표) 재무제표 각주에 기후 관련 효과 및 관련 정보 공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미정 (2024년 4월 초안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공시) IFRS를 참고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요구사항(S1)과 기후공시요구사항(S2) 제시 • (추가공시) 정책 목적에 따른 선택사항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 일반요구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은 2024년 1월1일부터, 생물다양성, 생태계, 생태계서비스, 인적자본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준비 중

*** 전자공시시스템: European Single Access Point

자료 출처: 백태영 & 이용희 (2024) 제15회 ESG-ON 세미나 발표자료에 기반하여 정리함

2. 플라스틱협약 발효와 연계된 환경인증

- 플라스틱협약¹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이행 수단은 객관적 평가에 기반한 환경인증 요소와 연결
 - 특히 제품 디자인, 구성, 성능 부문에서 인증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¹¹⁾¹²⁾을 찾을 수 있음
 - 관련 인증으로 제품 내 재활용 물질 함량, 자원효율성,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재제조 가능성, 제품 수명 및 내구성 등 다양하며 확장 가능함
 - 유해물질¹³⁾ 또는 마이크로플라스틱¹⁴⁾ 함유 플라스틱 제품 생산 저감/금지 또한 인증과 연계
 - 관련 인증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 무첨가, 플라스틱의 생물농축도/반감기/환경·인간 독성 등 화학 시험성적서 성격의 인증으로 기존 화학물질안전 정책영역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특화된 내용임
 - 이 외에도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제로 플라스틱, 해양 플라스틱 유래 인증 등이 파생 가능

3. 생물다양성 보존 제도 강화 움직임과 관련된 환경인증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계획¹⁵⁾(GBF, 2022년 채택)은 도전적인 목표 설정
 - 기존(2011~2020)의 전략계획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예정(국가생물다양성센터, 2024),
 - GBF의 23개 목표중 14번째 목표는 정책과 규제 전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함

10) 24년말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본 보고서는 2024년 4월에 개최된 정부간협상위원회(INC-4)에서 논의하였던 협약 수정 초안(revised zero draft)에 기반하여 작성함

11) “[Each Party][The governing body*]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plastics and plastic products [produced within its territory and those available on its market,]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the STEPs, and] the design and performance criteria and other related elements contained in part I of annex C, including, where relevant, sector- or product-specific criteria and elements, and shall require plastics and plastic products to be appropriately labelled in accordance with these criteria and elements.”

12) “OP2 Alt. Each Party shall consider including the following actions as part of its measures laid out in paragraph 1: a. Adopting public procurement policies or guidelines for plastic products to enhance circularity of plastic products; b. Promoting the use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standards for plastic products; c. Supporting efforts to establish or augment voluntary certification schemes for environmentally preferable products or packaging to encourage sustainable choices; d.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including any relevant sector- or product-specific standards and guidelines.”

13) “Require producers and importers of the relevant chemicals[, [plastic] polymers] or [plastics including plastic] products to appropriately mark and label them [based on the harmonized requirements contained in part II of annex A], to allow their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use and handling [throughout their life cycle], including their [reusability, reparability, recyclability and] final disposal.”

14) “Each Party shall shar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through the online registry established under [Part IV.6 on information exchange] with the aim of promoting transparency.”

15)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 15번째¹⁶⁾ 목표는 법적,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기업/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및 리스크 요소에 대해서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임
-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자연복원법 통과, 2050년까지 생태계 완전 복원 목표 제시
 -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2026년까지 회원국은 국가복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EU 집행위원회는 계획의 적절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함
 - 목표달성 방법은 개별국이 결정하며, 민간기업과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¹⁷⁾
-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및 훼손 시 기업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인식 증가
 - 기업 활동에 따라 생물다양성 또는 생태계가 훼손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 (1)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상승, (2) 자연에서 유래하는 원자재(자연자본)¹⁸⁾ 구매 비용 증가, (3) 소비자 선호도 저하 가능
 - ESG 공시 기준에 생물다양성 항목이 포함
 - EU의 ESRS는 4개의 하위 규정 중 하나(E4)에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기준 명시
 - 자연관련 재무공개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2023년 '자연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최종 초안을 발표, 향후 ISSB의 ESG 공시 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

16) "Target 15: Take legal,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and enable large and transnational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monitor, assess, and transparently disclose" their biodiversity risks, dependencies, and impacts through their operations, portfolios, supply, and value chains, including by providing more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reporting o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17) "(54) Financially attractive funding schemes for owners, farmers and other land-managers to voluntarily engage in such practices are important in delivering the long-term benefits of restoration.; (78) With reference to the LIFE Programm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appropriate use of the strategic nature projects as a specific tool that coul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gulation, by way of mainstreaming available financial resources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way.; (80) Funding nature restoration measures on the ground, through private or public financing, including result-based support and innovative schemes such as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schemes, could be promoted. Private investment could also be incentivised through public investment schemes, including financial instruments, subsidies and other instruments, provided State aid rules are complied with."

18) "S&P 글로벌 1,200대 기업 가운데 85%가 생태계에 '높은 의존도'를 보임"(뉴스트리, 2024.4.26.)

05

정책제언

1. 환경인증 관련
국내 정책·제도
현황

-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다수의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
 - 우리나라의 법률 및 규정에서는 표준화 및 환경인증을 통합하는 내용이 부재하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전문성과 관심도가 부족한 상황
 - 별도 개별 법령 또는 행정부 고시 등을 통하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 통합된 거버넌스 및 법제도 부재
 - 환경인증의 직접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가 다수 포함되어있으나, 환경부 소관 법률*이 밀접하게 연계되어있음
 - ※ 환경인증과 연계된 법으로 표4에 정리된 법률 외에 환경부가 주무부처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존재
 - EU의 경우 지속가능 조달 및 에코디자인과 같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구축

표 4 국내 환경인증 관련 부처/기관 및 법제도

관련 부처, 전담기관	관련 주요 법제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탄소중립기본법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화법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 녹색인증제 주무부처¹⁹⁾로 산업통상자원부만 표기되어있으나, 유관부처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존재

1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운영체계 참조(<https://www.koita.or.kr/conts/103002004002000.do>)

- 환경인증이 적용되는 정책영역 중 순환경제가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
 - 아래 표는 2018~2023에 발표된 순환경제 부문 환경인증 제도 현황을 보여줌

표 5 주요 순환경제 전환 촉진 정책에 존재하는 인증 관련 내용

주요 정책	순환경제 인증 관련 내용 일부 발췌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2018.9 관계부처 합동)	- (공공부문의 친환경 소비 확산) 녹색제품 인증 품목에 재활용제품을 확대하고 재생원료의 의무 이용률 명시 - 공공부문 공사·조달 관련 구매지침·규격 제·개정 및 조달 가점 부여 등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해 재활용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2020.9.17 관계부처 합동)	- (복합재질 필름 제품 GR 인증규격 마련)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제품의 GR 인증 활성화 및 공공기관에 구매 유인 제공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020.9.23 관계부처 합동)	- (국내 재활용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원료, 재활용제품 품질인증기준을 마련 하고, 기준을 충족한 재생원료 등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 사용 촉진
K-순환경제 이행계획 (*21.12.30 관계부처 합동)	- (품질개선) 재생원료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사용제품 인증기준을 마련 하고, KS 및 단체 표준 규격에 반영 . 재생원료고품질·고부가가치화 및 이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표준화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22.9.5 관계부처 합동)	- 타 품목에 비해 시장규모와 성장성이 주목되는 플라스틱 및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 활성화(배터리 재생원료 및 사용후 배터리를 GR 인증 대상 포함 추진)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23.6.21 관계부처 합동)	- 핵심자원의 순환이용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품질인증제' 개편, 품질인증 을 기반으로 순환자원 사용정보 표시하는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 ' 시행

출처: 김은아 외 (2023) p. 31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함

- 2023년부터 발표된 계획 중 준비 단계에 있어 정책 범위가 유동적인 환경인증 제도 존재
 - 자원효율등급제(산업부, 2023): K-에코디자인 정책으로 제품²⁰⁾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관련 평가 및 등급 부여
 - 재생원료 추적성 인증제도(산업부, 2023): 원료→소재→부품→완제품²¹⁾ 전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량 추적 및 인증

2. 그린워싱 방지 관련 유럽연합 vs. 국내 제도 비교

- 유럽연합과 한국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환경인증제도의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그린워싱 방지 제도를 개편함
 - 공통적으로 친환경 인증과 표시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도입, 제3자 검증 및 인증 과정에 의해 이행
 - 궁극적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하여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 2023년 스마트폰과 무선 청소기 대상 시범사업 진행, 매년 대상 제품군 확대 계획

21) 2023년 기준 배터리 원료, 전자제품(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 5개 제품 대상으로 시범사업 진행: 포함되는 재생원료는 플라스틱(ABS, PP, PC/ABS)과 금속물질(황산코발트, 황산니켈, 탄산리튬, 전해니켈, 전해구리)임

표 6 그린워싱 방지에 관한 국내, 유럽연합 제도 내용 비교표

구분	유럽연합	국내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워싱 방지 목적의 신규 지침(GCD)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린워싱 목적을 구현
그린워싱 방지 근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Claims Directive •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 Consumer Rights Dir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산업법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 식품표시광고법 • 환경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²²⁾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에서 폐기에 걸친 전 주기 환경성 • (전 생애 환경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 • 녹색전환 및 순환경제 맥락에서 소비자 권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환경관련 표지·광고 심사지침부터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고려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 내 관련 위원회*가 공동으로 제도화 과정에 참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인 제도를 시행

* 관련 위원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IMCO), 환경·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위원회(ENVI)

** 관련 부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김은아 외(2023) pp. 28-30의 내용을 구조화함

3.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업의 환경인증 대응력 강화 필요

■ 제도/거버넌스 복잡성 완화 필요

- 기존의 환경인증 및 그린워싱 방지 관련 법령과 거버넌스는 부처별로 파편적으로 운영, 유사 중복 영역에 대한 상이한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조정이 어려운 구조
- 이러한 복잡성은 기업의 대응을 어렵게하므로, 부처별로 추진되는 인증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다양한 글로벌 공시 기준 및 신규정책 대응 환경정보공개 통합 지원 솔루션 제공 필요

- ESG 공시는 협력사를 포함한 가치사슬 전체 정보 요구하므로 중소기업 또한 대기업 공시 시점에 맞춰 준비가 필요하나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
- 다양한 환경정보 공개 정책에 개별 대응하기보다 기업이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당국이 정책별 필요 정보를 끌어다 쓰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

■ 환경인증 시장 활성화 & 품질관리 필요

- ESG 인증 및 환경성과 검증 등은 민간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업무영역으로, 향후 비즈니스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국내 기업의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반면, 과열된 인증 시장은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느슨한 인증제도 운영은 해외 시장 진출시 소송의 이유 또는 무역장벽을 마주하는 여건으로 작용 가능
 - 따라서 국제표준 및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 기준을 정립, 평가/검증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22)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지침 개정,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참고문헌

김은아 외 (2023) 순환경제 글로벌 혁신전략: 표준화,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3-06.

대한상공회의소 (2024) EU ESG 공시기준 가이드북

백태영 & 이웅희 (2024) 제15회 ESG-ON 세미나 발표자료

장기복 (2023) ESG 동향과 정책지원 방향,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참고

화우 (2024)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7302>

지평 (2023)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847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7.14.) 스마트폰과 무선초소기, 자원효율등급 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11.16.)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ICMA (2022) Green Bond Principles, June 2021 (with June 2022 Appendix 1)

웹사이트

국가생물다양성센터

(<https://www.kbr.go.kr/content/view.do;jsessionid=B6DEC7F1EE61BC65461F628D98F918E3?menuKey=793&contentKey=173>)

뉴스트리 (2024.4.26.) S&P 글로벌 1,200대 기업 가운데 85%가 생태계에 ‘높은 의존도’를 보임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4260010>)

데이터트러스트 (2023.5.31.) 친환경 인증마크, 얼마나 받았을까?
(<https://datatrust.me/posts/a0tbX5>)

법무법인(유) 세종 (2024.3.27.) 그린워싱 규제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388>)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한경 (2022.04.10.) 본질 흐리는 건설사의 ESG 꼼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41058321>)

US EPA, (<https://www.epa.gov/vw/learn-about-volkswagen-violations>)
(접속일: 2024.6.26.)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2023.11.29.) Yogurt manufacturer admits “100% ocean plastics” claims misled consumers

(<https://www.edo.org.au/2023/11/29/yoghurt-manufacturer-admits-100-ocean-plastics-claims-misled-consumers/>)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2022.11.4.) Shell greenwashing complaint lodged with ACCC and Ad Standards

(<https://www.edo.org.au/2022/11/04/shell-greenwashing-complaint-lodged-with-acc-and-ad-standards-australia/>)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